제156회 창원시의회 (임시회)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6.10.27.)

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10. 27.(화)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회

창 원 시 의 회
(기획행정위원회)

1. 심사 경과

가. 발 의 일: 2026. 10. 15.
나. 발 의 자: 성보빈 의원 등 21명
다. 회부일자: 2026. 10. 20. (의안번호 제82호)
라. 상정 및 의결: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6.10.27.)

2. 제안설명 요지 (성보빈 의원)

재난대응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복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 진작에 기여하려는 것임.

3. 주요 내용

○ 소속공무원의 의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(안 제4조제7호)

4. 참고 사항

○ 관계 법령 등 (안건책자 참조)

5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정이)

□ 개정 목적 및 주요 내용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재난 대응 및 현장활동 등에 필요한 의복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제4조(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) ---------- 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7. 소속공무원의 재난대응이나 현장활동 등에 필요한 의복의 지원
7. (생 략)	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○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공무원와 관련된 사항으로,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창원시 소속공무원에 대한 의복 지급은 2020년에 실시한 바 있으며, 2023년 창원시와 노조 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54조[1]에도 근무복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.

○ 또한,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후생복지 관련 조례에 의복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. 【안건책자 P.11】

1) 단체협약 제54조(근무복 지원 등)
① 시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근무여건에 따라 단체복 예산을 확보하여 보급·지원하도록 노력한다.
② 조합원이 근무복을 착용할 경우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며 소속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한다.

□ 종합 의견

○ 공무원들이 재난 대응 및 현장활동 시에는 업무 특성에 맞는 적합한 의복이 필요하며, 근무복은 활동 편의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등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됨.

○ 따라서 소속공무원의 의복 지원은 후생복지 증진과 현장업무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의복과 달리 일반직 공무원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의복의 지급 주기를 적정하게 설정하고, 의복의 종류와 형태 또한 재난 대응 및 현장활동이라는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할 필요가 있음.

6. **질의 · 답변 요지**: 기재 생략

7. **토론 요지**: 기재 생략

8. **심사 결과**: **원안 가결**

9. **소수의견 요지**: 없음

10. **기타 필요한 사항**(부대의견, 건의 사항, 촉구사항 등): 없음